

검 토 보 고 서

연번	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	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	치수과	1
2	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		5

2013년 6월 25일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김 기 영
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6월 3일(월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 일자

2013년 6월 7일(금)

4. 관련근거

가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(법률 제11495호, 2012.10.22)

나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0조, 제65조
(대통령령 제24509호, 2013.4.22)

5. 폐지사유

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전부 개정되어 수방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본 조례의 유지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려는 것임.

6. 주요내용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전부개정(2005.1.27)되어 기존의 수방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,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의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「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」를 규정하여 운영 할 필요성이 없음.

7. 검토의견

-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전부개정(2005.1.27)되어 수방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되고,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이 새로이 신설되어, 우리구에서는 2009년 7월 30일자 조례 제756호로 「서울특별시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·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「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」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관계법령

■ 자연재해대책법 [법률 제11495호, 2012.10.22., 일부개정]

- 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4509호, 2013.4.22., 일부개정]

- 제60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)**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·군·구 단위로 구성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 단위로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(이하 "지역자율방재단장"이라 한다)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(互選)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-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5조(예산 지원)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(實費)로 지급할 수 있다.

※ 수방단의 설치·운영(폐지 법령)

< 자연재해대책법 >

제12조 [수방단의 설치·운영] ①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·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(이하 "수방단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<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>

제12조 [수방단의 설치기준등]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(이하 "수방단"이라 한다)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·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한다. 이 경우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·리 또는 자연부락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통·리에 2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2이상의 통·리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수방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수방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3조 [수방단의 조직기준]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은 당해 지역의 주민으로 조직하되,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이상 50인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방단에 본부 및 경계반·복구반·구호반등을 둔다.

제14조 [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] ① 시장·군수 및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수방단원의 비상소집
2.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그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요령
3. 방재의식의 계몽
4.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방단원을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방단원소집통지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하고, 수방단장은 즉시 당해 단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. 다만, 수방단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상소집 할 수 있다.

③ 수방단원으로 편성된 민방위대원이 수방단으로 소집되는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교육훈련을 면제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방단원이 소집된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5조 [수방단의 세부운영사항]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